

베트남 코트라/코참

개정세법을 반영한

이전가격 실무 세미나

2019.02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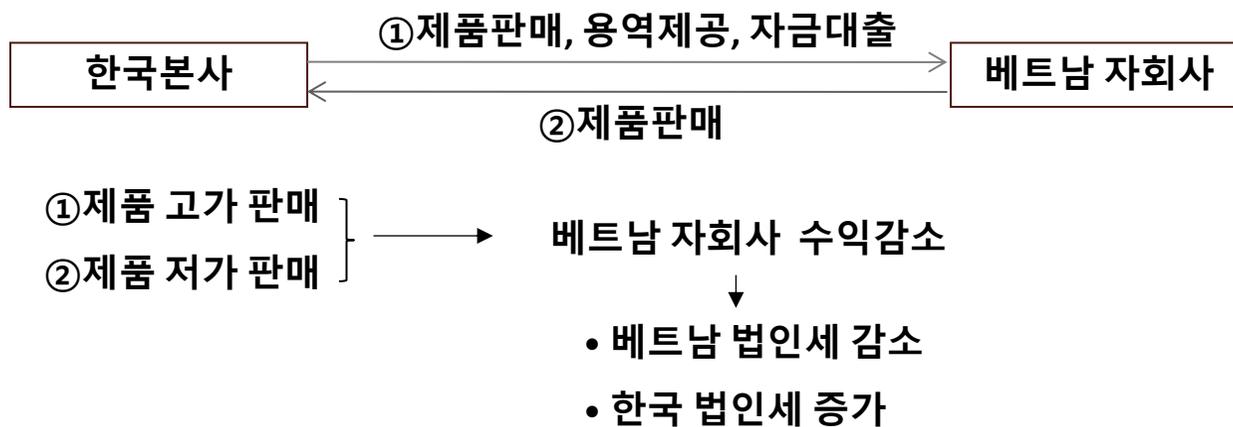
- 1 이전자격 개요
- 2 이전자격 문서구성
- 3 이전자격 세무조사와 APA/MAP
- 4 베트남 이전자격 규정해설
- 5 준수위험 및 이전자격세무조사 위험
- 별첨 CTAC 회사소개

제1부분 이전가격 개요

이전가격 개요

이전가격이란

국외 특수관계자간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 수수되는 거래가격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정상가격(시장가격) 대비 고가나, 저가로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외 기업으로 이전함으로써 세금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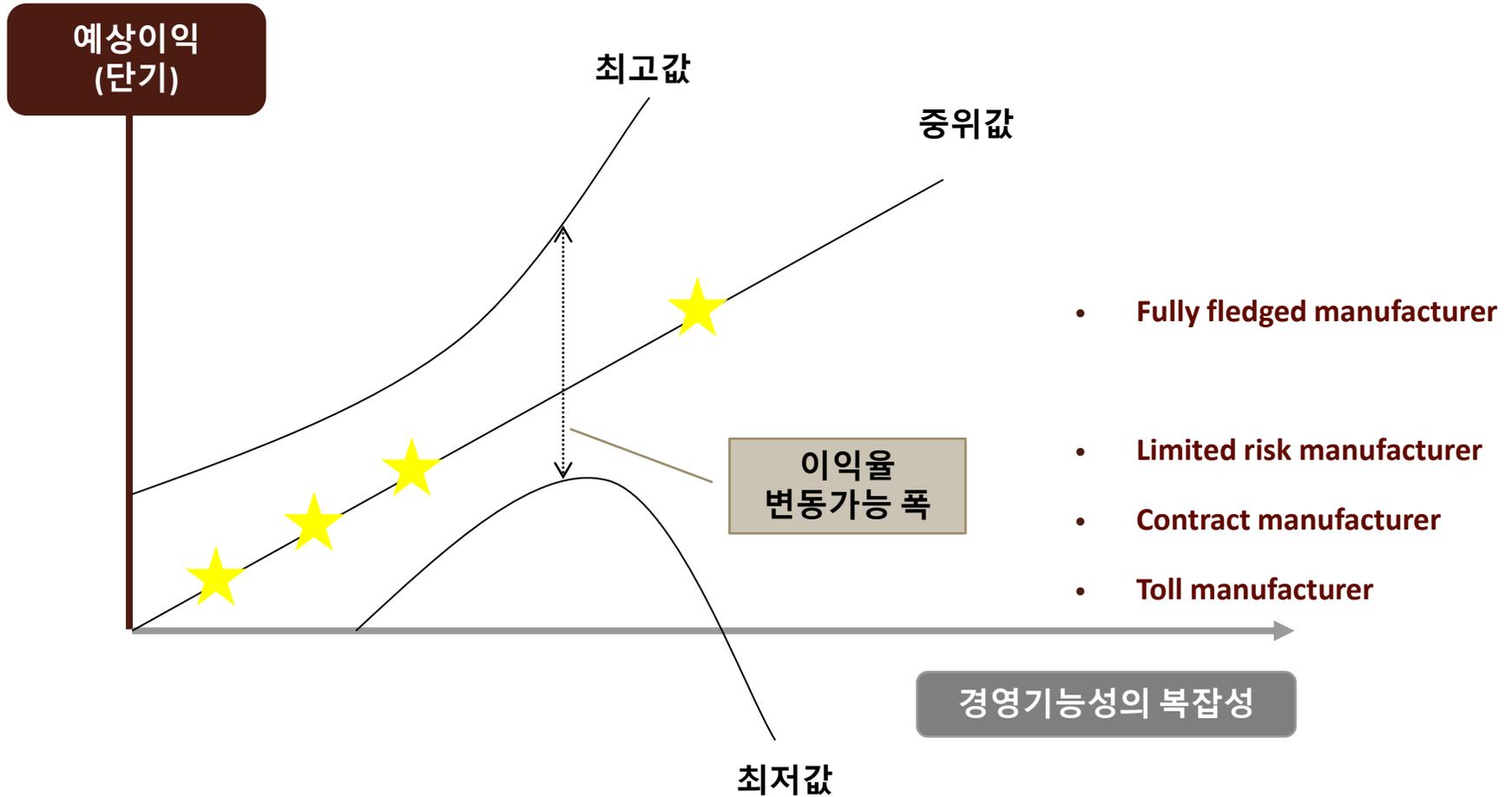
이전가격세무
조사 수검 위험
존재

• 이전가격 세제: 관계사간 거래가격 조작을 통해 이익을 국외로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해결방법

APA(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 각국 과세당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미래의 이전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는 제도로서 과거 거래 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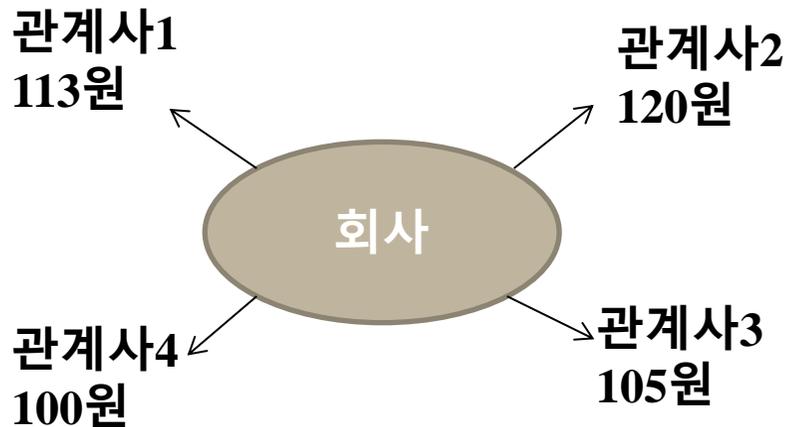
제조법인 경영기능성과 예상이익의 복잡성 관계 - 단기적



이전가격 조정원칙

1. 관계회사 Vs 비관계회사 (관계회사 Vs 관계회사 X)

예: 100 → 120 20원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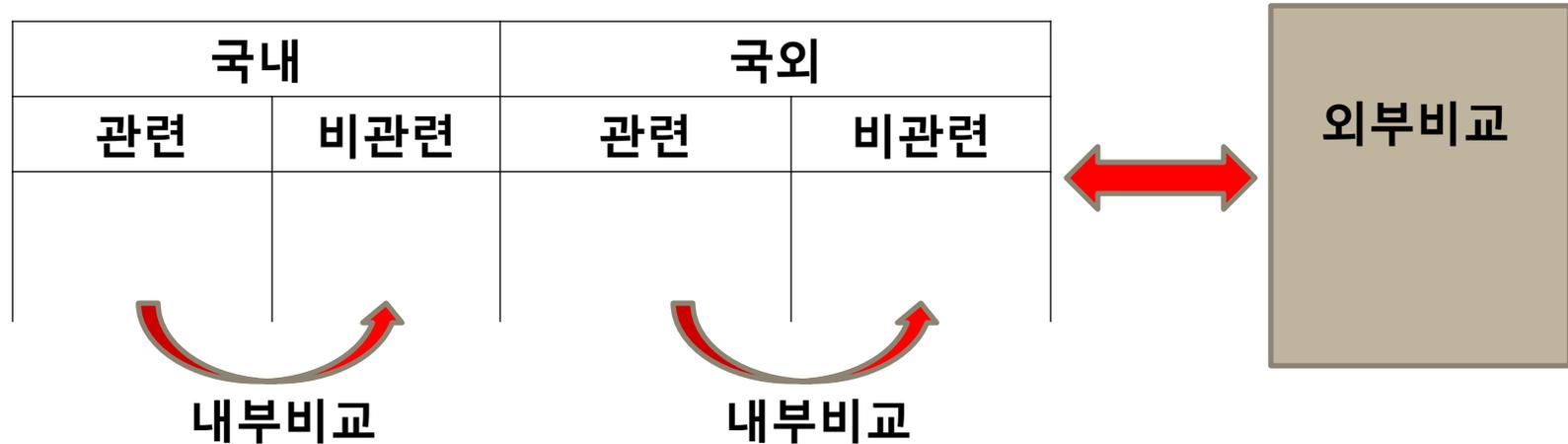
이전가격 조정원칙

- 2. 가격비교 Vs 수익율 비교: 세법의 6가지 방법 중 5가지 방법은 수익률 접근방법임.
 - 1) 가격비교: 예) 관계사 100, 비관계사 110 → 10원 조정?? (CUP 방법)
 - 2) 수익율비교: 방법2~방법6 전부 수익율로 비교함
- 3. 전체 회사의 수익율 높음 ↑ → 이전가격 위험 없음?: 이전가격 과세는 거래 종류별로 과세할 수 있음.

업종	도매	제조	서비스
수익율	(-)	30%	(-)	20%
				

이전가격 조정원칙

4. 내부비교가능거래 Vs 외부비교가능거래



5. 국내 특수관계기업간 거래도 기업간 적용 세율이 다른 경우에 조정 대상임. (예: 제조기업 20%, 도매기업 25% 인 경우)

BEPS Action Plans 개관 및 대응

■ 개관

정상가격원칙

경제적 실질과 가치창출 기여도에 따라 이익 배분

문서화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국가별보고서(CbC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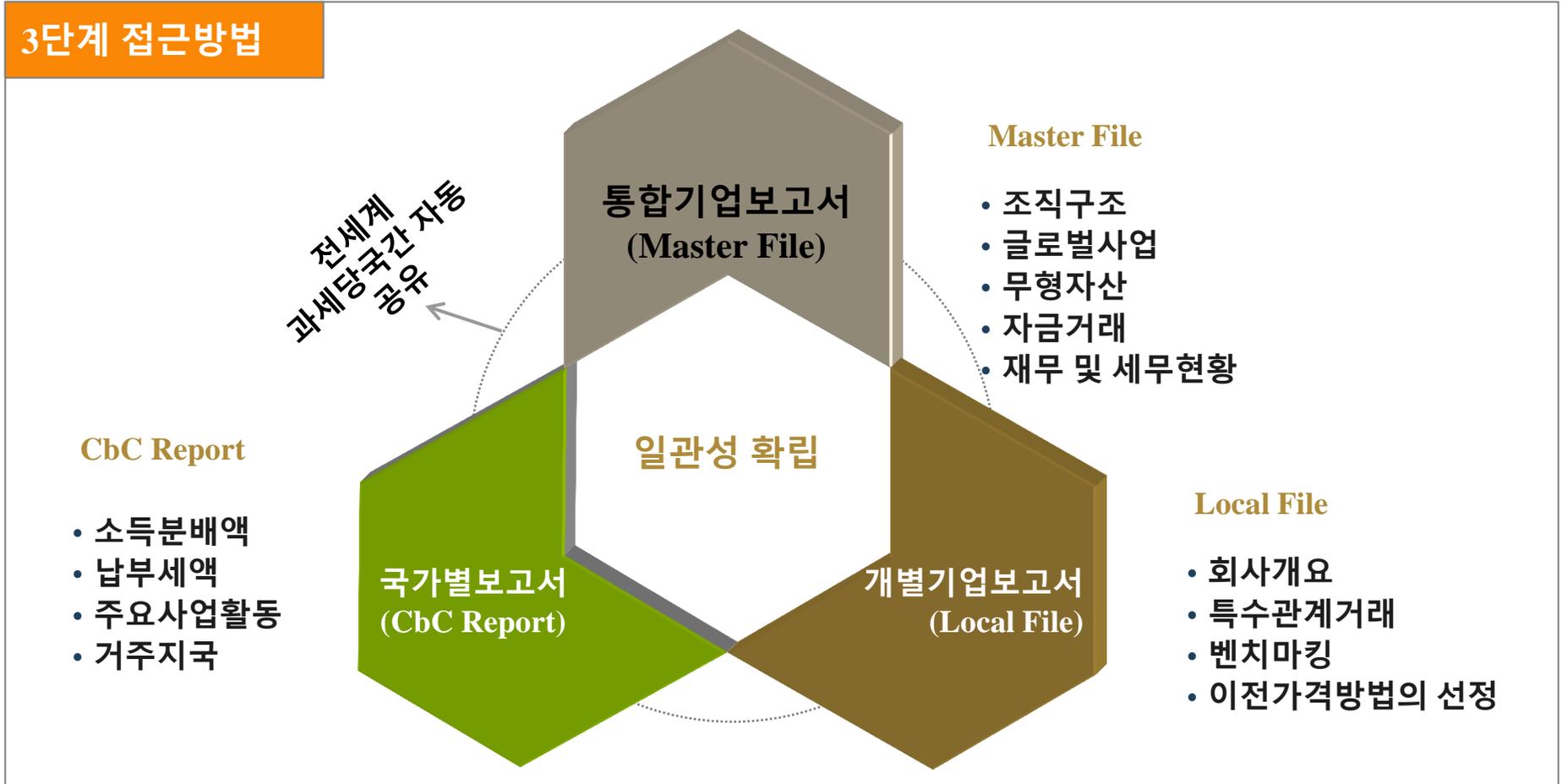
분쟁해결

상호합의절차→해결 불가 시 강제중재 적용

■ 대응

- 각 구성원의 수행 기능 및 부담 위험을 **경제적 실질과 가치창출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전가격검토**
- 이전가격정책 수립 또는 필요의 경우 기존의 이전가격정책 변경
- 국내외 입법동향 파악, **이전가격문서화 관리 및 모니터링, 해외 자회사에 지원 제공**
- 무형자산의 중요성 부각 : **무형자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내부거래 구도 필요

이전가격 문서화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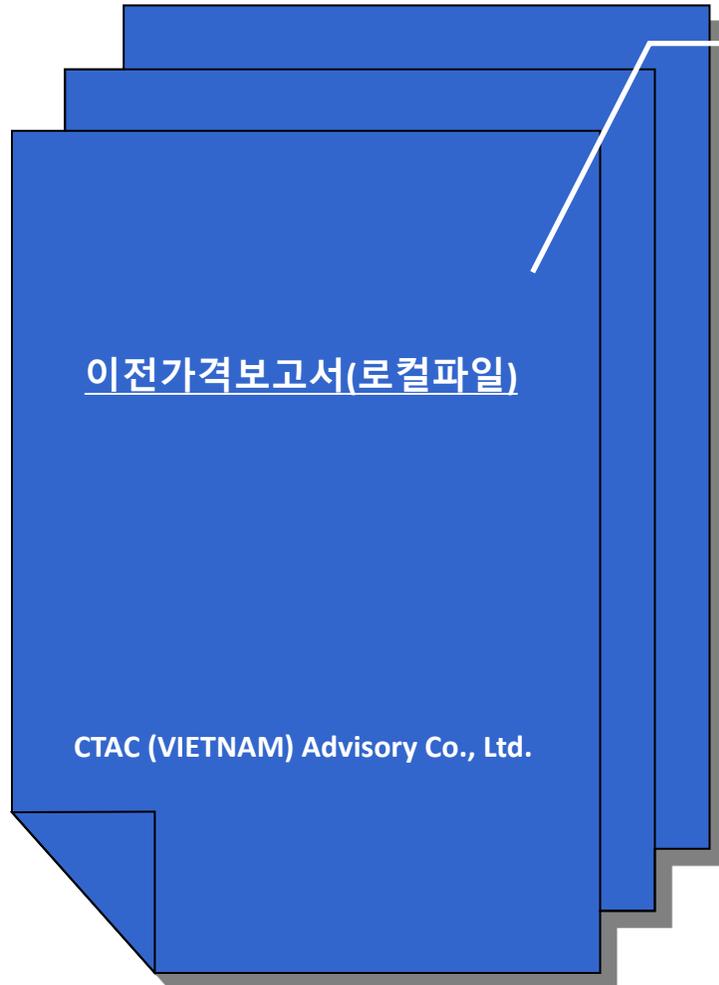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기능분석 결과를 이전가격 문서화 정보(Master File, Local File, CbC Report)에 일관되게 반영

제2부분 이전가격 문서구성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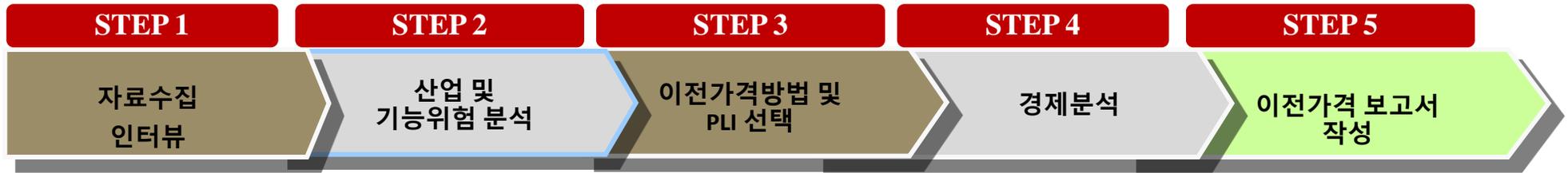
❖ 이전가격 보고서 - 로컬파일 요약내용



- ✓ 목적과 절차
- ✓ 사업개관
- ✓ 산업분석
- ✓ 기능과 위험 분석
- ✓ 그룹가치사슬분석
- ✓ 이전 가격방법 및 수익성 지표 선택
- ✓ 유사 데이터 조사 및 선택
- ✓ 경제분석 및 특수요인분석
- ✓ 결론 및 제안
- ✓ 보고서 제출 및 설명

문서화 진행절차

표준 서비스 단계 흐름



STEP 1 : 자료수집 및 인터뷰

이 단계에서는 기업과 그 제휴사가 가진 기능 및 위험, 기업과 제휴사가 이용한 이점 등 거래사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모든 관련정보수집을 위해 운영팀, 생산부서, 다국적 기업 및 제휴사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집니다.

STEP 2: 산업및 기능위험 분석

기업의 산업상황과 시장 경쟁 환경에 따른 산업 및 기능적 분석 실시 및 실행된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하여 회사의 이전가격분석상 제조, 도매, 서비스 회사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STEP 3: 이전가격방법 및 PLI선택

검토된 각각의 특수관계자 에 가장 적합한 이전 가격법과 수익성 지표(PLI)를 적용합니다.

STEP 4: 경제분석

선택된 비교물의 수익을 확립하기 위한 경제 분석 실시 및 사분위수를 이용하여 정상가격범위를 얻기 위한 검증된 회사들과 비교합니다.

STEP 5: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기업의 구조조직, 사업운영 소개, 특수관계자 안내, 비요 가능한 데이터 분석, 이전가격방법 선택과 실행 등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루는 포괄적인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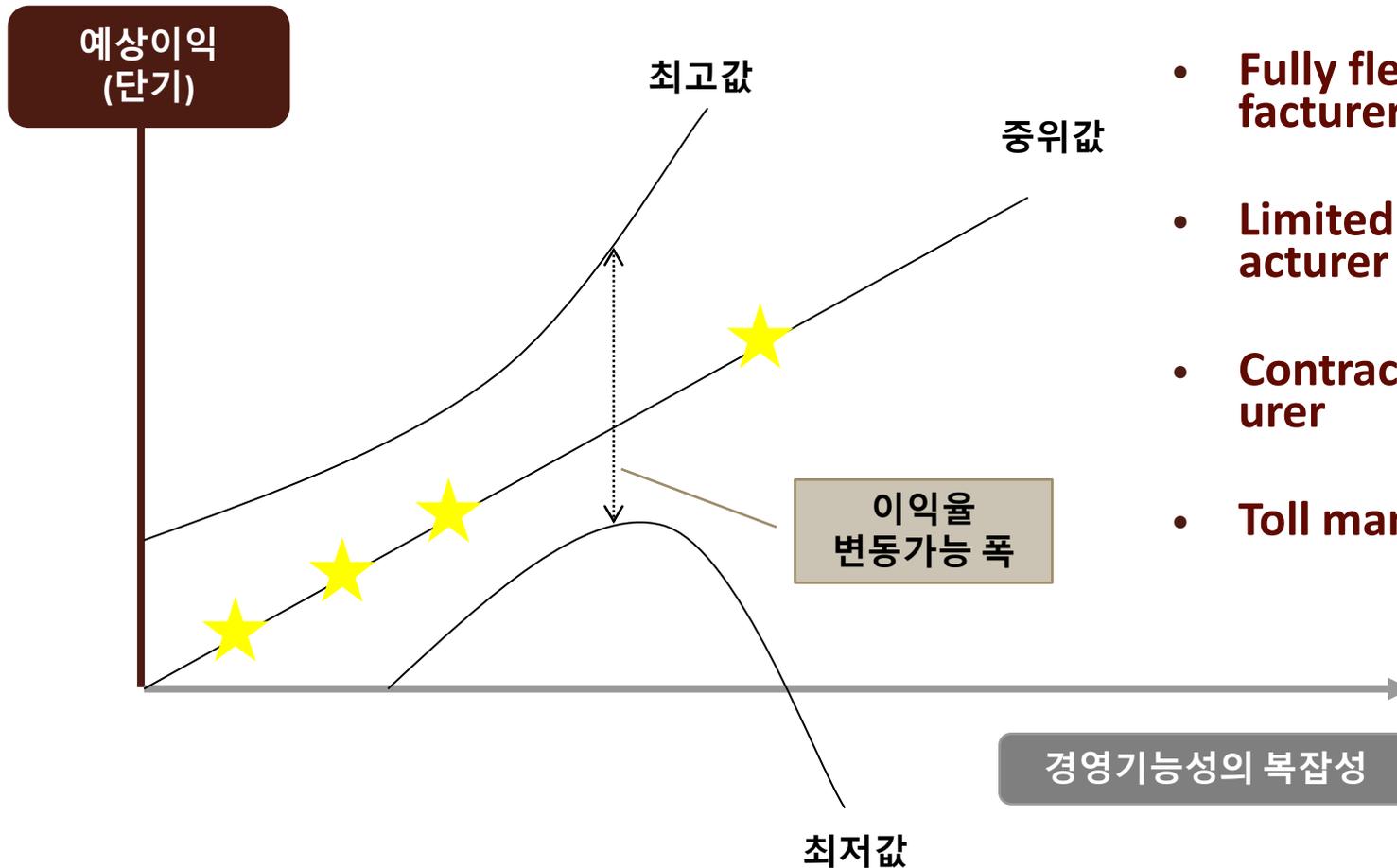
기능위험분석 - 제조업자의 종류

1. Function	Type of manufacturer			
	Toll manufacturer	Contract manufacturer	Limited risk manufacturer	Full-fledged manufacturer
Procurement	X	√	√	√
Warehousing	X	√	√	√
Manufacturing	√	√	√	√
Packaging / labelling	X	√	√	√
Distribution	X	X	√	√
R & D and product design	X	X	√	√
Administration (includes IT)	√	√	√	√
Sales & marketing	X	X	X	√
Strategic management	X	X	X	√

기능위험분석 - 제조업자의 종류

2. Risk	Type of manufacturer			
	Toll manufacturer	Contract manufacturer	Limited risk manufacturer	Full-fledged manufacturer
Supplier risk	None	Med	Med	Med
Market risk	Low	Low	Med	High
Inventory risk	None	Low	Med	High
R&D risk	None	Low	Med	High
Product liability risk	Med	Med	Med	Med
Warranty risk	None	Med	Med	Med
Quality control risk	Med	Med	High	High
Credit risk	Med	Med	Med	Med
Foreign exchange risk	None	*	*	*

기능위험분석 - 법인별 기능/위험의 수준 검토



- Fully fledged manufacturer
- Limited risk manufacturer
- Contract manufacturer
- Toll manufacturer

이전가격 결정방법

구분	방법	접근방법별 구분	검토대상별 구분
전통적 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UP)	가격접근법	일방검토방법
	재판매가격방법 (RPM)	수익률접근법	
	원가가산방법 (CPLM)		
기타의 방법	거래순이익율방법 (TNMM) 비교가능이익분할방법 (CPM)	수익률접근법	쌍방검토방법
	이익분할방법 (PSM)		

이전가격의 경제분석

- 경제분석은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의 기능/위험/산업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이전가격 방법을 선정하고, 선정된 이전가격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결과를 요약하는 부분
- 이전가격 보고서의 핵심 부분으로 가장 중요함
- 경제분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일 수익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 사분위 값을 사용하여 정상가격 범위를 계산함.
- 비교가능회사의 사분위 값과 비교하여 검토대상회사의 관계회사 거래의 수익성 지수값이 하위사분위값과 상위사분위값에 포함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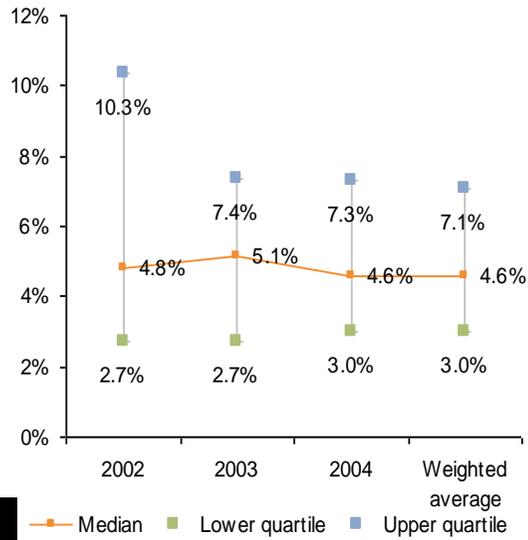
수익성지표 (PLI)

- 수익성 지표는 이전가격 방법을 적용한 후에 회사가 정상가격범위 안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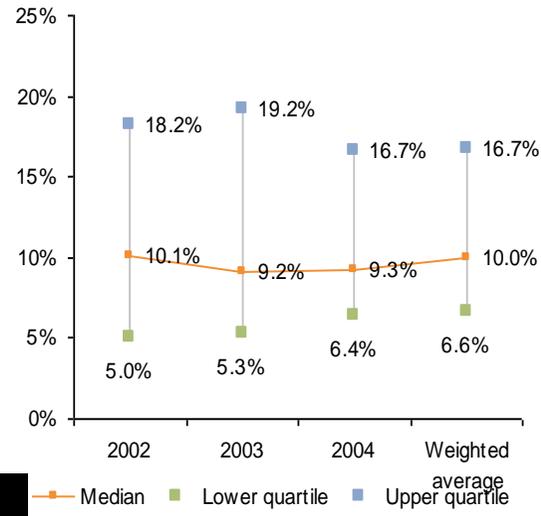
방법	PLIs
재판매가격법	-매출총이익
원가가산방법	-원가가산율
거래순이익율방법 (비교가능거래방법)	-영업이익율 (OM) -총원가가산율 (NCP) -자본수익율 (ROCE) -자산수익율 (ROA) -영업비용비율 (Berry ratio)

경제분석 결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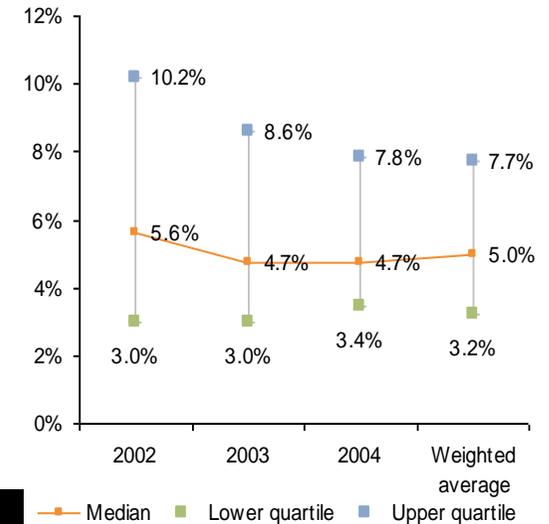
NCP



ROCE



ROA



제3부분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APA/MAP

이전가격 세무조사

이전가격과세위험의 발생

→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당기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기업

→ 과소이익 또는 결손이 발생한 기업이 다양한 종류의 특수관계자 거래존재

→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회사와 빈번한 거래가 있거나 손익의 변동이 심한기업

그 중 과세당국은 적은 이익 또는 결손이 발생하지만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한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함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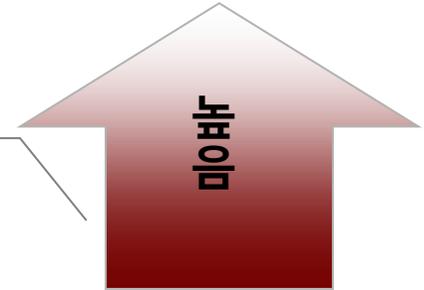
대응전략

- A. 이전가격 관리 시스템 구축 (이전가격 정책 및 지침서 작성)
- B. 이전가격 문서화 준비
- C. 상호합의 (과거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한 협상)
- D.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미래 부분에 대한 협상)
- E. 기업내 일상적 관리능력의 향상
 - 대부분의 회사가 관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지직원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
 - 많은 경우 현지직원은 세법규정 등을 확인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처리하던 방식을 답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베트남세무는 계속 변화하므로 반드시 부서장 및 경영진이 교육등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현지 동향을 점검하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함.

위험도 별 이전가격 위험관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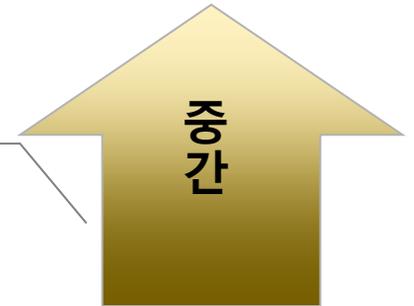
- 이전가격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일방APA 및 쌍방APA를 수행(리스크가 크고 중요할 경우)

A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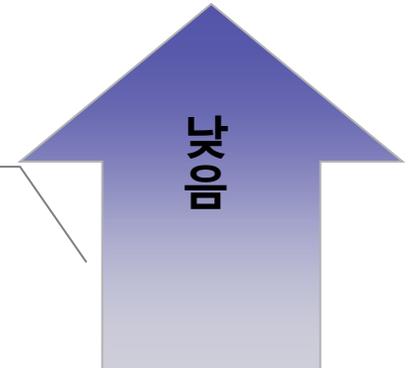
- 이전가격 위험이 중간정도인 경우에는 이전가격 문서화 수행

문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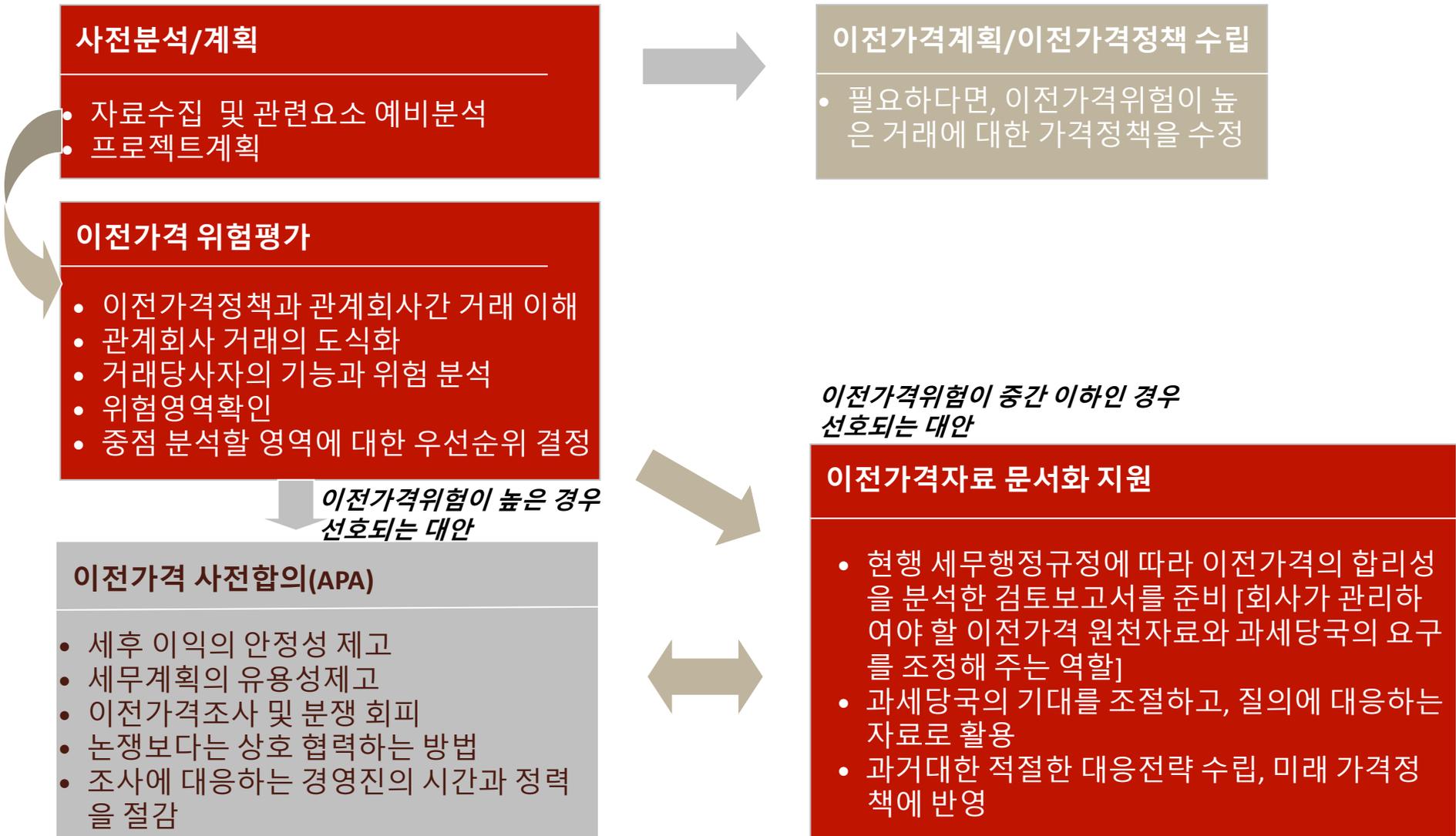
- 이전가격 위험이 낮은 수준이라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위험분석 또는 정책서 정도만을 수행

위험평가
/정책서



APA와 이전가격 문서화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향후 이전가격위험이 대두되어 APA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문서화된 자료가 기초정보로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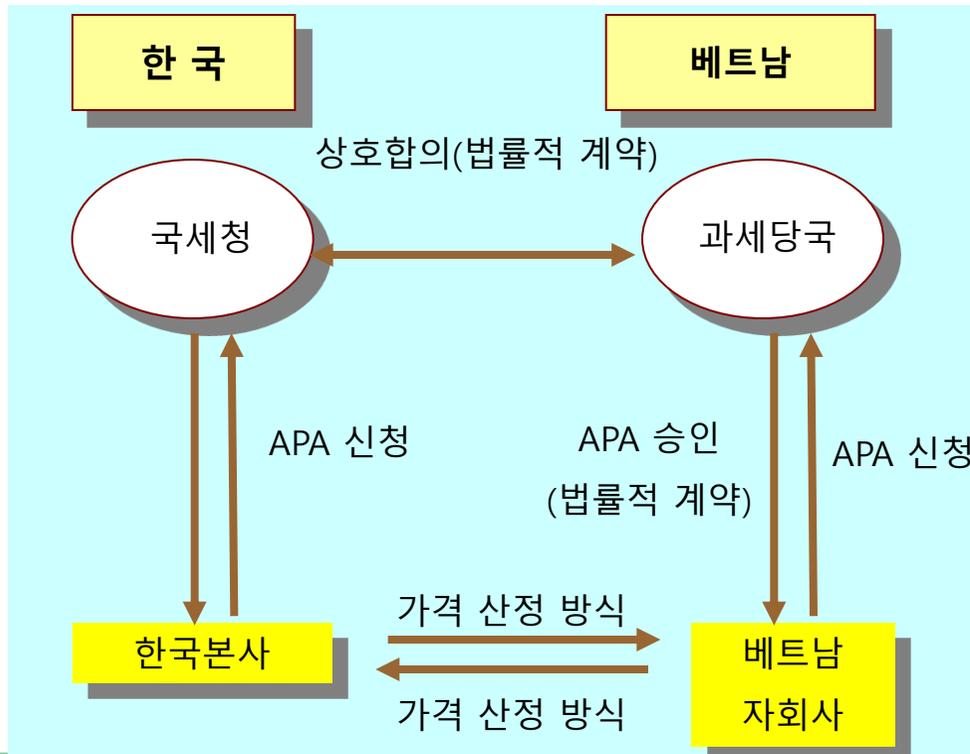
문서화 & 사전가격합의 적용절차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이진가격사전합의제도) 개요

다국적기업이 해외모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가격인 이진가격의 산정방식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 향후 미래의 이진가격 거래에 대해서 미리 과세당국과 합의하여, 이진가격 과세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 과거연도의 경우에도 미래거래와 형태가 다르지 않은 경우, 합의한 내용을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양국 세무당국간의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이중과세가 해소됨.



❖ 쌍방(Bilateral) APA > 일방(Unilateral) APA

❖ 장 점

- 납세자 - 이진가격 Risk를 회피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음
-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상 예측가능성 부여
- 세무당국 - 조사행정력 절감, 안정적 세수확보 가능
-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지속적인 신뢰구축 가능
- Bilateral APA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 원천적 해소 가능 (상대국에서의 대응 조정 가능)

❖ 단 점

- 납세자 - 조사에 준하는 자료 제출 및 이진가격 전문가 고용에 따른 비용 발생
- 과세당국 - 방대한 자료분석 부담

APA의 활용 및 APA가 적합한 기업

APA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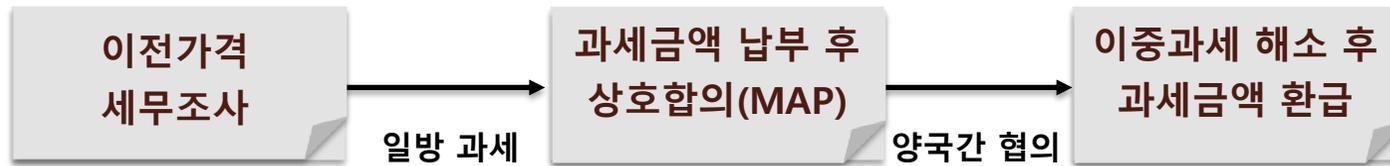
- 이전가격 세무조사 수검회피
- 미래의 확실성 확보
 - 상당한 금액규모의 관계회사거래
 - 새로운 사업 (M&A 포함)
 - 새로운 국가로의 확장
 - 난해하거나 위험이 높은 이전가격 문제
- 이중과세회피
- 대부분의 이전가격문제는 APA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유형자산 가격결정
 - 모든 종류의 서비스거래
 - 사용료가 포함된 무형자산문제
 - 원가분담약정

APA가 적합한 기업

- 안정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회사 (예: 위탁 또는 수탁 생산)
- 논쟁의 여지가 있는 관계회사거래가 있는 회사 (예: 고액 또는 고율의 기술사용료)
- 이전가격조사 이력이 있는 회사

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상호합의

- 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상호합의 제도는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APA와 달리, 이미 양 국가간에 이중과세가 발생한 후에 당해 발생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념.



- MAP는 일반적으로 일방국가에서 이전가격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에, 당해 납부한 세금으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국 과세당국에 MAP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 MAP의 진행과 협상은 APA와 매우 유사합니다.
- 그러나 MAP는 APA와는 달리 이중과세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양국 과세당국이 협상을 하는 것이므로, 협상의 중심은 어느 일방 또는 양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된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APA와는 달리 협상의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Why APA?

APA의 장점

1. 쌍방APA는 양국간 과세/환급조정으로 이중과세 문제 원천적 해소 가능
2. 베트남/한국 과세당국과 합의를 통한 이전가격 위험을 회피
3. 세무조사 분에 대하여, 미래의 합리적인 이익수준에 의한 타결을 유도할 수 있음
4. 미래 사업연도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수립
 - 그룹의 세후 이익에 대한 확실성 부여
 - 계획된 세무상 이익실현 보장
5. 이전가격 세무조사 수검 회피
6. 진행/협상 환경이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되므로, 세무조사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 도출
7. 협상결렬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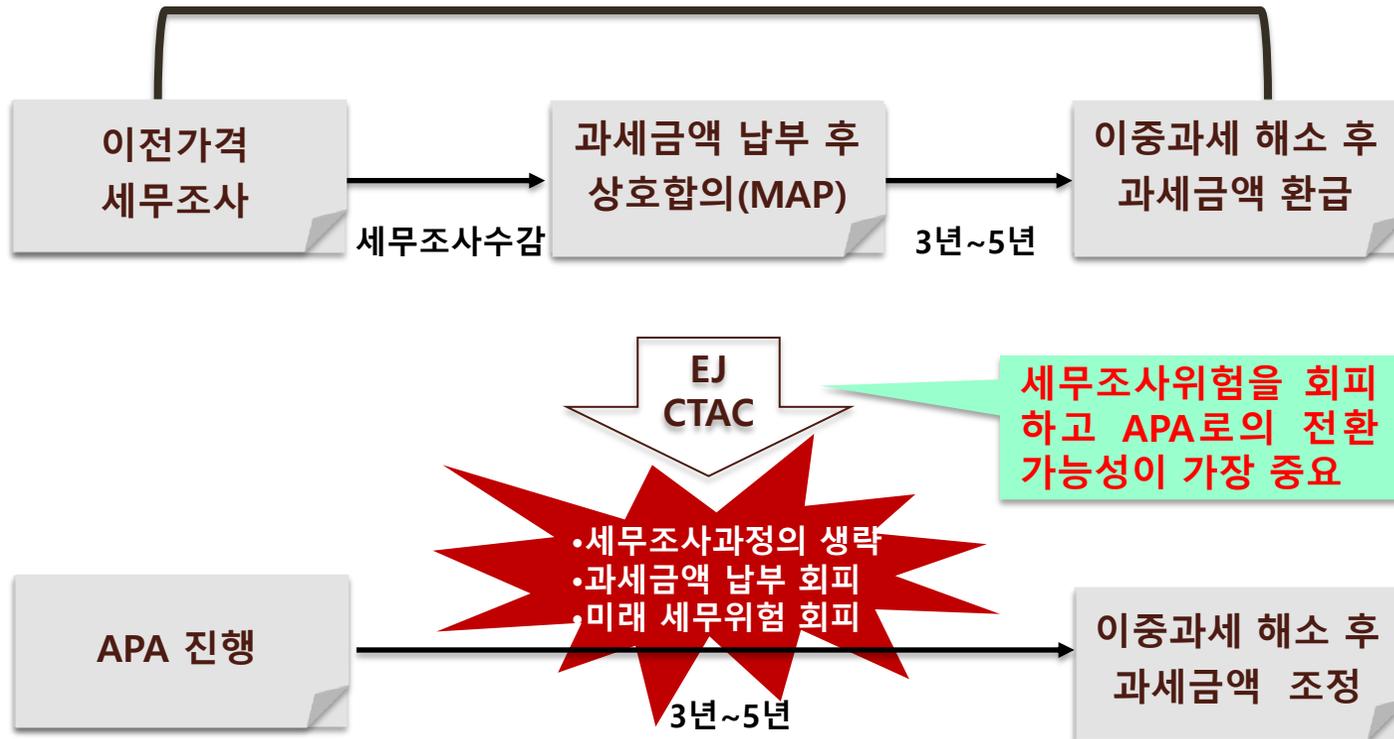
세무조사 & MAP의 단점

1. 세무조사 시 이중과세 발생. MAP(이전가격대응 조정) 진행 시 이중과세문제의 해결이 가능
2. 세무조사의 경우 일방 과세당국과 기업의 협상이기 때문에 미래 위험 회피 불가능
3. 세무조사 시 과세당국에서 과거기간에 대한 과세를 극대화하려 할 것임
4.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조정, 조사를 선 진행
5. 경내 타 관계사로의 조사범위 확대 가능
6. 진행/협상 환경이 세무조사의 경우 대립/적대적이기 쉬움
7. MAP의 진행이 매우 까다롭고 협상이 타결될 지 여부에 대하여 불확실함(베트남 세무당국의 강경입장)

❖ MAP의 경우 시간(세무조사 종결 후 상호합의 진행, 3~6년)과 비용이 APA(1~3년 정도)보다 많이 소요됨

Why APA?(계속)

- 세무조사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 시 까지 총 3년-6년 가량이 소요되며, 과세금액 납부 후 상호합의 성공 시에만 환급



- APA(사전가격합의) 진행 시에는 3년 가량이 소요되며, 과거연도 이중과세문제도 한국과 베트남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상호 조정가능.

제4부분 베트남 이전가격 규정해설

Decree No. 20/2017/ND-CP(2017.2.24) – 신규정 개요

1. OECD BEPS 규정 준용하여 3단계 이전가격문서화 규정 도입

- Group business information(Global master file)
- Local TP documentation(or Local file)
- Report on the transactional profitability results in the form of country by country report(CbCR)

2. 실질과세의 원칙

- 그룹내 용역제공, 이자, 무형자산, 고정자산 매입, Routine 기능에 대한 이익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제공
- 비교가능성분석과 비교대상선정 작업, 이전가격 신고 규정 변경과 이전가격 협력의무 면제 등의 규정 제공

3. TP doc 작성 및 제출

-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까지 작성해서 준비할 것.
- 세무조사시 과세당국 요청시 15일 이내에 제출 할 것.

4. CBC report

- • 내용 : 매출액, 이익, 세금납부액, 종업원 수, 자본금, 자산, 주요 영업 형태와 기능 등
- • 제출 대상
- • 외국계 회사 : 본국의 모회사가 제출 대상일 경우 제출 대상
- • 베트남 회사 : 매출 18조동 이상일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구 이전가격 규정 (Circular 66)	신 이전가격 규정 (Decree 20)
지분보유	20% 이상 지분을 직,간접으로 보유	25% 이상 지분을 직,간접으로 보유
사업관계	50%를 초과하여 한 거래처로부터 매입 또는매출하고 있는 경	모두 삭제됨
차입관계	타회사 자본금의 20%를 초과하여 지급보증하고, 장단기차입금의 50%를 초과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	타회사 자본금의 25%를 초과하여 지급보증하고, 장단기차입금의 50%를 초과하여 제공하고 있는경우
실질지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이 타방의 이사회 임원 50% 초과 지명, 그 임원이 타방의 재무정책, 사업활동과 관련한 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 일방이 타방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관리나 의사결정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세무 공무원의 재량권이 개입할가능성이 높아짐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한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년 개정)

베트남: Decree No. 20/2017/ND-CP(2017.2.24)

<p>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 - 해당 과세 연도 매출액 1,000억원 초과; 및 국외특수관계 거래규모 500억원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국가별보고서 -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이 5백억동(약 25억) 이하 및 특수관계자 거래가 3백억동((약 15억) 이하인 경우 혹은 • 단순 기능 업체로 매출액이 2천억동 이하인 업체 (동시에 도매 5%, 단순제조 10%, 단순임가공 15% 이상인 경우) • 국가별보고서 - 외국계 회사 : 최종 모회사가 제출 대상일 경우 제출 대상
<p>적용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여, 2017. 1.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회계연도 부터 적용
<p>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 국가별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거래명세서 +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 국가별보고서
<p>신고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까지 작성해서 준비할 것. • 세무조사시 과세당국 요청시 15일 이내에 제출 할 것.
<p>미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와 별도로 이전가격 조사 대응 시 추가적 불이익이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이 인정과세를 할 수 있으며, 비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하여 세액을 산정함.

경제분석

1. 비교대상업체의 경우 우선 적용의 원칙

- 내부비교가능회사
- 국내비교가능회사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회적 경제적 지역의 비교가능회사

2. 비교대상회사의 수는 중요한 차이를 조정할 수 없는 경우 5개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된 3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서 이익률분석을 하여야 함.

3. 독특한 무형자산은 비교가능성 분석이 필요

4. Location saving 및 Market premium 고려

5. 중요한 차이 조정을 못한 경우에는 중위값 사용을 권장

서비스 거래

관계사간에 용역이 제공된 거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용 인정

1. 제공되는 용역이 상업적, 재무적, 경제적 가치가 있고 그 납세자의 사업활동에 직접 사용될 것
2. 제공되는 용역이 제3자간에도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될 것
3. 정상가격기준에 부합하는 용역대가가 지급되고, 관계사간의 비용 배분은 그룹 전체의 유사한 용역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것
4. 납세자가 계약서, 관련 문서, 송장과 계산방법 및 그룹의 가격정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관계사간 용역거래로 비용 인정이 안되는 경우

1. 다른 관계사에게 효익 또는 가치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용역과 관련된 비용
2. 관계사들의 주주에게 효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3. 납세자가 얻는 경제적 효익이 분명하지 않은 비용
4. 특수관계기업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받는 효익에 대해 지출한 비용
5. 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관계사 용역에 있어 관계사가 제3자 용역에 더하여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용
 특히 모기업과 기술 지도 계약,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로열티 를 지급하는 경우 비용 인정 요건 강화
 (먼저 세무서에서 비용 부인을 하고 반대의 입증을 회사에게 전가하는 방식)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신고서 요약

- 이전가격 관련 신고서 (TP declaration)
 - Form No. 01: 법인세 연말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Form No. 02: Local file (로컬 파일 명세- 베트남 본사와의 거래요약)
 - Form No. 03: Master file (마스터 파일 명세- 통합기업보고서)
 - Form No. 04: CBC report (국가별 보고서)
 - 베트남회사 - 최종 연결 모회사의 연결매출액이 18조 VND 이상
 - 외국계회사 - 본국의 모회사가 해당 국가에서 제출대상인 경우 제출
- 제출 기한 : 법인세 연말 정산 신고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까지 제출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표 (Form 1)

Form No. 01

INFORMATION ON TYPE OF RELATED PARTY RELATIONSHIPS AND TRANSACTIONS

(Attached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finalization form No. 03/TNDN)

Tax period: from.....to.....

[01] Full name of tax payer

[02] Tax code

--	--	--	--	--	--	--	--	--	--	--	--	--	--	--	--	--	--	--	--

--	--	--	--

[03] Address

[04] District: [05] Province/City:

[06] Tel: [07] Fax: [08] Email:

[08] Name of tax agent (if any):

[09] Tax code of agent:

--	--	--	--	--	--	--	--	--	--	--	--	--	--	--	--	--	--	--	--

--	--	--	--

SECTION I. INFORMATION ON RELATED PARTIES

No.	Name of related party	Tax jurisdiction	Tax code	Type of related party relationship ¹												
				A	B	C	D	D	E	G	H	I	K			
(1)	(2)	(3)	(4)													
1																
2																
...																

¹ Tax payer should tick "x" on the column respective to the type of related party relationship as stipulated in Article 2 of this Decree. In case there are more than one type applicable, taxpayer should tick "x" on all columns that apply.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표 (Form 1) (계속)

SECTION II. EXEMPTION FROM TRANSFER PRICING DECLARATION AND DOCUMENTATION

No	Type of exemption	Applicable exemption ²
(1)	(2)	(3)
1	Exempted from transfer pricing declaration of Section III and IV below	
	Taxpayer is engaged in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who are subjected to corporate income tax in Vietnam, which all have the same tax rate as taxpayer's, and no tax incentive within the tax period	
2	Exempted from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	Taxpayer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but within a tax period, taxpayer's total revenue is less than VND50 billion and total value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is less than VND30 billion	
b	Taxpayer has already entered into the 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and has already submitted the annual report in accordance with APA regulations	
c	Taxpayers performs simple functions, neither generating any revenue nor incurring any cost from exploitation of intangible assets, having revenue of less than VND 200 billion, and having the profitability ratio of net operating profit before interests and CIT over revenue meeting the following threshold for respective sectors:	
	- Distribution: at least 5%	
	- Manufacturing: at least 10%	
	- Processing: at least 15%	

² Taxpayer should tick "x" to the criteria of exemption applicable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표 (Form 1) (계속)

SECTION III. INFORMATION FOR DETERMINING PRICES IN RELATED-PARTY TRANSACTION (RPT)

Currency: VND

No.	Items	Value of products/services provided to related party				Value of products/services received from related party				The profit increased due to transfer pricing adjustment	Payment/ Collection on behalf/ Income allocated to PE	Transactions under APA
		Recorded value of RPT	Value after adjustment to price in uncontrolled transaction	Difference	Transfer pricing method	Recorded value of RPT	Value after adjustment to price in uncontrolled transaction	Difference	Transfer pricing method			
(1)	(2)	(3)	(4)	(5)= (4)-(3)	(6)	(7)	(8)	(9)=(8)- (7)	(10)	(11)=(5)+(9)	(12)	(13)
I	Total value of all transactions arising from operating business											
II	Total value of related - party transactions											
1	Goods											
1.1	Goods forming fix assets											
a	Related party A											
b	Related party B											
	...											
1.2	Goods not forming fix assets											
a	Related party A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표 (Form 1) (계속)

No.	Items	Value of products/services provided to related party				Value of products/services received from related party				The profit increased due to transfer pricing adjustment	Payment/ Collection on behalf/ Income allocated to PE	Transactions under APA
		Recorded value of RPT	Value after adjustment to price in uncontrolled transaction	Difference	Transfer pricing method	Recorded value of RPT	Value after adjustment to price in uncontrolled transaction	Difference	Transfer pricing method			
(1)	(2)	(3)	(4)	(5)= (4)-(3)	(6)	(7)	(8)	(9)= (8)-(7)	(10)	(11)=(5)+(9)	(12)	(13)
b	Related party B											
2	Services											
2.1	Research and Development											
a	Related party A											
b	Related party B											
	...											
2.2	Promotion, advertisement											
a	Related party A											
b	Related party B											
2.3	Business management, consulting, training											
	Related party A											
	Related party B											
2.4	Financial activities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표 (Form 1) (계속)

No.	Items	Value of products/services provided to related party				Value of products/services received from related party				The profit increased due to transfer pricing adjustment	Payment/ Collection on behalf/ Income allocated to PE	Transactions under APA
		Recorded value of RPT	Value after adjustment to price in uncontrolled transaction	Difference	Transfer pricing method	Recorded value of RPT	Value after adjustment to price in uncontrolled transaction	Difference	Transfer pricing method			
(1)	(2)	(3)	(4)	(5)= (4)-(3)	(6)	(7)	(8)	(9)= (8)- (7)	(10)	(11)=(5)+(9)	(12)	(13)
2.4.1	Royalty and similar fees											
a	Related party A											
b	Related party B											
2.4.2	Loan interests											
a	Related party A											
b	Related party B											
2.5	Other services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표 (Form 1) (계속)

SECTION IV. PROFIT AND LOSS RESULT AFTER MARKET PRICE REASSESSMENT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1. Taxpayers operating in manufacturing, commercial and services sectors

Taxpayer have already entered into 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Yes	No
----------------------------------------------------------------------	-----	----

No	Items	Value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Value of uncontrolled transactions	Total value of all transactions within tax period
		Value determined in Transfer Pricing Report	Value determined according to APA		
(1)	(2)	(3)	(4)	(5)	(6)=(3)+(4)+(5)
1	Revenue from sales and services				
1.1	Revenue from sales of exported goods and services				
2	Deduction of revenue				
3	Net revenue from sales and services				
4	Cost of goods sold				
5	Gross profit from sales and services				
6	Selling expenses				
7	General administration expenses				
8	Revenue from financial activities				
8.1	Revenue from loan interests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표 (Form 1) (계속)

No	Items	Value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Value of uncontrolled transactions	Total value of all transactions within tax period
		Value determined in Transfer Pricing Report	Value determined according to APA		
(1)	(2)	(3)	(4)	(5)	(6)=(3)+(4)+(5)
9	Financial expenses				
9.1	Interests				
10	Depreciation expenses				
11	Net operating profit				
12	Net operating profit before interests and corporate income tax				
13	Net operating profit plus interests and depreciation expenses (13=11+9.1+10)				
14	The ratio of loan interests over Net operating profit plus interests and depreciation expenses (14=9.1/13)				
15	Profit margin applied for determining price in related-party transactions				
A	Profit margin.....				
B	Profit margin.....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표 (Form 3)

LIST OF INFORMATION AND DOCUMENTS REQUIRED IN MASTER FILE
(Attached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finalization form No. 03/TNDN)

Form No. 03

Tax period: from.....to.....

[01] Full name of tax payer

[02] Tax code

[03] Address

[04] District: [05] Province/City:.....

[06] Tel: [07] Fax: [08] Email: [08] Name of

tax agent (if any):

[10] Tax code of agent:

Tax payer confirm preparing and maintaining information and documents listed below:

No.	Documents	Prepared & maintained	Note
1	Organisational structure		
1.1	Chart illustrating the MNE's legal and ownership structure and geographical location of operating entities		
2	Description of MNE's business		
2.1	Important drivers and activities of business profit		
2.2	A description of the supply chain for the group's five largest products and/or service offerings by turnover plus any other products and/or services amounting to more than 5 percent of group turnover. The required description could take the form of a chart or a diagram		
2.3	A list and brief description of important service arrangements between members of the MNE group, other tha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services,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capabilities of the principal locations providing important services and transfer pricing policies for allocating services costs and determining prices to be paid for intra-group services		
2.4	A description of the main geographic markets for the group's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referred to in the second bullet point above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표 (Form 4)

Form No. 04

DECLARATION OF COUNTRY BY COUNTRY PROFIT

(Attached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finalization form No. 03/TNDN)

Tax period: from.....to.....

Full name of tax payer

Tax code

Name of tax agent (if any):

Tax code of agent:

SECTION I. OVERVIEW OF INCOME, TAXES AND BUSINESS ACTIVITIES BY TAX JURISDICTION

Country	Revenue			Profit (loss) before income tax	Income tax accrued	Income tax paid	Stated capital	Accumulated earnings	Number of employees	Tangible assets other than cash and cash equivalents
	Unrelated party	Related party	Total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신고서 요약 (계속)

- 이전가격 문서화 면제 (Safe Harbour)
 - Form 1 (section 1,2 만) + NO TP report:
 - 국내 관계사간 거래 (두 관계사가 모두 세율이 동일하고 세제혜택이 없는 경우)
 - Form 1 (section 1 ~ 4) + NO TP report:
 - 매출액이 500 억동 미만이면서,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300 억동 미만인 경우
 - APA 를 체결한 납세자
 - 매출액이 2,000 억동 이하로 EBIT (이자 및 세금공제전 영업이익) 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유통: 5%,
 - 제조: 10%,
 - 임가공: 15% 이상 이면서, 무형자산 거래 (로열티 등)가 없는 경우

벌칙 및 기타

세무서가 인정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

- Form No.01 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or 제출된 신고서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 Form No.02 및 03 의 기재된 정보가 미흡할 경우
- 비교대상기업, 비교대상가격 등의 산정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사용한 경우, 불법적인 정보를 사용한 경우, 원천데이터의 소스 제공에 불명확한 경우 등
- 이전가격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세무서의 **비공개** 데이터베이스 (Secret Comparable) 에 근거하여 세액을 산정함

법인세법 상 이자비용부인

-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 등(본사 포함) 에 이자비용 지급 시, 차입시점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의 15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불인정
-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지 않아서 이자율 산정이 애매한 상황

시행령 20의 이자비용의 제한

- 이자비용은 EBITA (당기순이익+이자+감가상각비+세금을 제외한 이익) 의 20%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

제5부분 이전가격 과세사례

이전가격문서화 작성의 필요성

- ❖ 이전가격 보고서와 신고서 등을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이전가격 세무조사시 이전가격 과세 결정 권한이 온전히 세무서로 넘어가게 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항변권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이전가격 보고서와 신고서 등을 제때에 제출하였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위험이 있음.

	신고서	보고서	각주
1	X	X	
2	○	X	
3	X	○	
4	○	○	신고 내용과 보고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5	○	○	선택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적절하지 않음
6	○	○	불법적인 무효 자료, 데이터 및 서류에 의존

위험 분석



과세사례

A기업 - Tien Giang 성 의류 봉제 임가공 기업

세무조사기간 손실(-5.64%)이 발생하였으나,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였으며, 세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당국은 A기업이 준비한 이전가격보고서의 중위값(2.68%)수준으로 총원가가산율을 조정하였음.

B기업 - Binh Duong성 섬유제품 제조 법인

세무조사기간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음. 세무당국에서 제시한 이익률수준에 따라 전체 조사기간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총 17,504,54,874VND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였음.

지역별 세무당국에서 제시한 정상이익률

Dong Nai 성 섬유제품 제조 및 임가공 기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정 이익률	4.76%	5.06%	4.89%	4.65%

Binh Duong 성 섬유, 가죽 제품 제조 법인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조정 이익률	8.04%	10.37%	5.03%	10.17%	3.87%	6.87%	7.20%	7.87%

CTAC 회사소개

회사개요

CTAC Advisory Group

- CTAC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다국적 국제조세자문그룹입니다.
- CTAC는 중국(베이징과 상해, 광저우, 천진등 주요도시), 한국, 베트남(호찌민, 하노이), 싱가포르, 홍콩에 관련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 및 대기업 그룹군에 대한 전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CTAC는 독립법인으로 멤버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문가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CTAC (VIETNAM) ADVISORY CO., LIMITED - CTAC의 베트남 자문법인

- CTAC (VIETNAM) ADVISORY CO., LTD. (이하 "CTAC VN") 은 CTAC 그룹의 한국고객 서비스팀으로 베트남에 소재한 고객에 이전가격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노이 및 호찌민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 CTAC VN은 이전가격 전문팀이며, APA/MAP 모두 타결 경험보유하고 있는 자문기관으로 이전가격 보고서, 이전가격 정책서 및 BEPS 대응(로컬파일 및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을 위한 최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일중 회계사

Senior Partner / CPA (Korea, US Delaware)

CTAC (VIETNAM) ADVISORY CO., LIMITED.

Mobile: +84 86 992 3374 (Vietnam)
 +86 186 0210 9447 (China)
 +82 10 8220 3374 (Korea)

Email: ilchung.kim@ctacgroup.com

Website: www.ctacgroup.co.kr